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2. 1.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남현주 의원 등 10명(김장관, 정순옥, 임미연, 이선주,
이진환, 박종길, 정창근, 권숙자, 장호섭)
- 발의일자: 2023. 1. 20.(금)
- 회부일자: 2023. 1. 20.(금)
- 검토기간: 2023. 1. 20.(금) ~ 1. 26.(목)

2. 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가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에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2조의3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4조(통일부 훈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을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민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달서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31)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구의회 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사항의 협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